

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74,745,222	23,242,357
일반회계	724,748,852	21,742,466
특별회계	49,996,370	1,499,891
기타특별회계	49,996,370	1,499,891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47,404,837	1,422,145
주택사업특별회계	13,000	39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54,473	31,634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171,710	5,151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212,350	36,371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40,000	4,2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할 수 있다.